#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제 2 소 위 원 회 심의 · 의결

**안 건 번 호** 제2024-223-712호

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피 심 인 (사업자등록번호: )

대표자

의결연월일 2024. 11. 27.

# 주 문

1.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과 태 료 : 3,000,000원

나. 납부기한 :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
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## 이 유

### I. 기초 사실

피심인은 「舊 개인정보 보호법」(법률 제16930호, 2020.8.5. 시행, 이하 '舊 보호법'이라 한다)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,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.

#### < 피심인의 일반현황 >

피심인명	사업자등록번호	대표자 성명	주소	직원 수

#### Ⅱ. 사실조사 결과

#### 1. 조사 배경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침해신고가 접수('22.4.26.)되어 사실조사를 진행('24.4.15.~'24.7.26.)하였으며, 피심인의 보호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### 2. 행위 사실

### 가. 개인정보 침해신고 관련 사실관계

## 1) 신고 내용

피심인이 설치·운영하고 있는 CCTV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침해신고가 접수('22.4.26.)되었다.

## 2) 사실관계 확인 결과

신고인<sup>\*</sup>은 피심인에게 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였으며('22.4.14.), 피심인은 타인이 같이 촬영되어 있다며 열람을 거절하였다('22.4.18.).

\* 신고인은 로, 舊 보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음

이에 신고인은 타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식별 조치한 후 열람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('22.4.27.), 피심인은 외 영상에 등장한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고, 명백히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생명, 신체,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이에 불응하였다('22.5.2.).

- ※ 개인정보 보호법 상 이의신청과 정보공개법 상 이의신청은 별개의 제도이나, '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'는 법령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각 기관마다 양식을 자유롭게 마련하고 있는 점,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을 다른 방법을 통하여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다른 방법도 허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, 개인정보 열람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정보공개법 상 이의신청서로 달리 제출하였더라도 해당 기관이 이를 접수하여 처리하였다면 실질적으로 그 신청은 적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- ※ 해당 CCTV 영상은 별도 보관 중

#### 3. 개인정보의 취급·운영 관련 사실관계

## 가.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거절한 행위

피심인은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(CCTV 영상) 열람 요구에 대해 타인이 같이 촬영되어 있어 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한 사실이 있다.

## 4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

#### Ⅲ. 위법성 판단

#### 1. 관련 법 규정

舊 보호법 제35조제3항은 "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#### 2. 위법성 판단

## 가.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거절한 행위

[舊 보호법 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제3항]

피심인이 적법한 근거 없이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(CCTV 영상) 열람 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.

#### Ⅳ. 처분 및 결정

#### 1. 과태료 부과

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5조제3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0호,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[별표2] 제2호터목, 「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」(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, 2023.9.15. 시행, 이하 '과태료 부과지침'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#### 가. 기준금액

舊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[별표2]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,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을 600만원으로 산정한다.

#### < 과태료 부과기준 >

OI HLૠ OI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		
위반행위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터.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경우	舊 법 제75조 제2항제10호	600	1,200	2,400

#### 나.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

#### 1) 과태료의 가중

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제1항은 "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[별표 3]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제3항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제1항의 과태료 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.

#### 2) 과태료의 감경

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제1항은 "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[별표 2]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"라고 규정하고, 같은 조 제2항은 "[별표 2]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, 제2호 1) 및 2)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, 최종 합산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피심인의 경우, '비영리법인인 경우(30%이내)'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30%를 감경하고, '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(20% 이내)'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20%을 감경하여 기준금액의 총 50%를 감경한다.

<	과태료	부과지침	[별표 2	] - 과태료	감경기준	>
---	-----	------	-------	---------	------	---

기준	감경사유		감경비율	
업무	1. 위반행위자가 비영리법인, 비영리단체 등인 경우로서 무보수성, 공익성,	기준금액	30%	
형태	비영리성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	30% 이내		
조사	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	기준금액	20%	
협조	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	20% 이내		

#### 다. 최종 과태료

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· 감경을 거쳐 총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#### < 과태료 산출내역 >

위반행위(세부내용)	기준금액	가중액	감경액	최종 과태료
개인정보 열람 요구 거절	600만원	-	300만원	300만원

# V. 결론

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5조제3항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제2항제10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##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(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)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.